

‘학교승강기 배상책임 특별약관’ 전면 시행



2020년 9월 1일부터 승강기가 설치된
‘전국 유.초.중.고.특수.기타학교’에
“학교 승강기 배상책임 특별약관”이
전면 시행됩니다.



승강기법에 따른 승강기*(엘리베이터, 휠체어리프트 등)
사고로 이용자**의 신체·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
관리주체인 학교장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.

* 승강기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승강기

**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로서,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·시설물 입주자 및 구내 상주자 포함

구분	주요내용
보험가입	·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(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30조)
보상한도	· 대인: 사망 1인당 8,000만원, 후유장애 1인당 8,000만원, 부상 1인당 1,500만원 한도 · 대물: 1사고당 1,000만원 한도 · 기타: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, 1사고당 500만원 한도
가입대상	·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적용을 받는 모든 승강기 - 승객용, 화물용 등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가입대상이며, 검사연기(휴지), 불합격 승강기를 포함함
가입확인	· 국가승강기정보센터 (http://www.elevator.go.kr) “정보열람-승강기 정보열람”을 통해 확인

